
○○신항 일반·모래부두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특정감사 결과 보고



전라남도
JeollaNamdo

(감사관)

○○신항 일반·모래부두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특정감사 결과 보고

I.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 ○○ ♠♠ 신항 일반 및 모래 부두 건설공사 기본·실시설계 용역 진행 상황에 대한 감사
- 감사내용 : ○○ ♠♠ 신항 설계변경, 공법·자재 선정 적정성 등 용역진행 중 문제 제기된 내용에 대해 감사
- 감사기간 및 인원
 - 2021. 2. 1.(월)부터 2. 15(월)까지 9일간 감사인력 8명을 투입 특정 감사 실시

II. 사업개요

- 위 치 : ○○군 ○○읍 ♠♠ 신항 일원 / 사업비 466억원
- 사업규모 : 모래 및 일반부두(240m), 호안(70m), 부지조성(16,800㎡)
- 기 간 : 사업설계(2012.~2020.) / 공사추진(2021.~2024.)

Ⅲ. 추진경과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2. 12.
 - 접안시설에 선박 접안 시 파랑을 저감할 수 있도록 소파블록 방식 반영
 - 설계서에 최저가인 매블록을 반영하고, 선정은 낙찰 후 시공업체가 선정
- 정부합동감사 지적(준설토 투기계획 변경 : ▶▶항→♣♣항 내) : 2013. 10.
- 제1차 보완 설계 : 2014. 9. ~ 2015. 12.
 - 준설토 투기장 변경 지적을 반영하고 접안시설을 이글루 블록으로 변경(사유: 경제성)
- 제3차 연안항 기본계획 고시(준설토 ♣♣항 내 투기 반영) : 2016. 10.
- 제2차 보완설계(2020.8. 용역 중지) : 2020. 2. ~ 8.
 - 제작장 부지 임대문제로 접안시설 소파블록을 공법에서 관급자재로 변경
 - 자재선정 : 규격·블록특성·안정성 등이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이 가능한 3개사(♠♠, ♣♣, ♥♥)의 소파블록
 - * 사유 : 소파효과 우수성과 전남 관내제품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 : 2020. 9. 22.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현황

- 기본 및 실시설계 - 주식회사♠♠, 주식회사♣♣
 - 계약개요 : (기간) 2011.7.25. ~ 2012.12.18. / (금액) 397백만원 / (방법) 전국, 적격심사
 - 과업내용 : 기초자료 조사, 현지조사, 기본 및 실시계획, 설계도서 및 보고서 작성
- 제1차 보완설계 -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 계약개요 : (기간) 2014.9.17. ~ 2016.1.19. / (금액) 564백만원 / (방법) 전국, 적격심사
 - 과업내용 : 기본 및 실시계획 보완, 투기장 실시설계, 설계도서 및 보고서 작성
- 제2차 보완설계 - 주식회사♥♥♥
 - 계약개요 : (기간) 2020.2.27. ~ 2020.8.27.(중단중) / (금액) 19백만원 / (방법) 수의*
 - * 사유 : '15년 보완설계 수행업체로 기존자료 활용하여 설계비용 최소화
 - 과업내용 : 기초자료 조사, 현지조사(기존자료 활용), 일반 및 모래부두 보완설계, 설계도서 및 보고서 작성

IV. 감사결과

【문제 제기 1】

- 2012년 최초 설계 당시 3개 소파블록(매블록, 이글루블록, 와록블록)을 검토하여 매블록으로 설계단가를 적용하였고, 매블록 특허권자인 유한회사●●과 신기술(특허)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 당초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특허) 협약서의 파기나 조치 없이 다른 블록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

- 전남도 〰〰〰〰과는 2012년 12월 최초 설계에서 접안시설의 소파블록 중 3개 소파블록(매블록, 이글루블록, 와록블록)을 검토하여 단가가 가장 낮은 “매블록(특허공법)”을 설계 단가에 적용하고, 향후 시공업체가 3개 블록 중에서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 선정하도록 함
 - 그리고, 〰〰〰〰과는 3개 블록 중 특허권이 있는 매블록 개발권자 유한회사●●과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발주부서가 신기술(특허)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기술보유상황으로 제한입찰을 하려는 경우 실시설계 전 기술보유자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 사용협약서의 내용은 특허 기술사용료 면제, 기술권자의 하도급 참여, 향후 제한입찰 시 협약내용을 반영하여 계약 업무를 진행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함(2012.12월)
- 한편, 〰〰〰〰와 유한회사●●의 「신기술(특허) 협약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기술사용과 하도급 내용이 반영되었고, 최종 블록 선정은 향후 시공업체가 선정하므로, 시공업체가 매블록을 선정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이 있음(「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제5조)

- 그리고 道 고문변호사인 ♥♥♥은 ‘사용협약은 구체적인 내용 없이 단순히 장래의 세부사용 협약 체결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협약을 폐기하거나 세부사용 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음(2020. 12. 29.)
- 살피건대, 신기술(특허) 협약서 제5조에 따라 2012년 매블록이 선정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협약을 체결한 점, 신기술(특허) 협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道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등으로 보아 협약 당사자가 신기술(특허) 협약서에 있는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됨

[문제 제기 2]

- 2014년 1차 보완 설계에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까지 무시하고 당초 경제성에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검토된 매블록 공법을 배제하고 이글루 블록 공법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

- ♣♣♣♣는 해양수산부 항만기본계획의 항만구조물 내진기준 상향과 2013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원거리 준설토 투기로 인한 예산 낭비의 이유로 ‘준설토 투기장을 광양항에서 녹동항 내로 변경’ 하라는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2014.6월부터 2016.1월까지 1차 보완 설계를 하게 됨
 - ♣♣♣♣는 준설토 투기장 변경 사항을 1차 보완 설계에 반영하였고, 접안시설 안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설계에 보완 반영함
- 나아가, ♣♣♣♣는 블록의 크기와 중량의 증가, 거치 수량 등을 반영하여 경제성도 재산정한 결과, 거치 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 ‘이글루블록’ 이 더 저렴한 것으로 검토되어 이글루블록으로 변경함
- 매 블록 : 단가 43.8백만원/m, 접안시설 총공사비 : 8,760백만원
- 이글루블록 : 단가 43.6백만원/m, 접안시설 총공사비 : 8,720백만원

○ 상향 조정된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부두의 상재하중^{*}(50kN/m²→100kN/m²)을 변경 적용하였고, 블록 중량을 증가시킴으로 접안시설 안벽 안정성을 확보함

* 지반이나 바닥 위에 적재되는 상부 흙 중량

○ 2012년 설계와 비교해서 2016년 1차 보완 설계에서는 매블록은 폭이 1m 증가하였고, 이글루 블록은 폭이 0.5m 증가함

- 매블록 : 5.0(B)×2.5(L)×1.7(H) ⇒ 6.0(B)×2.5(L)×1.7(H)

- 이글루블록 : 5.5(B)×3.0(L)×1.7(H) ⇒ 6.0(B)×3.0(L)×1.7(H)

○ 그리고, 당초 2012년 설계에선 소파블록 외 콘크리트블록 길이(L)를 2.0m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매블록의 공사비가 이글루블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 2016년 1차 보완 설계에서는 매블록 적용시에는 원래규격대로 2.5m(L)의 콘크리트블록을 적용하였으며, 이글루블록 적용시에도 원래규격대로 3.0m(L)의 콘크리트블록을 적용하여 거치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글루블록이 저렴한 것으로 검토됨

○ 그리고, 매블록은 특허제품으로 특허와 관련된 특허시비가 있을 수 있으나 이글루블록은 특허기간이 만료되어 특허분쟁의 소지가 없는 점을 고려함

○ 살피건대, 2014년 1차 보완 설계는 정부합동감사의 지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내진기준 상향을 준수하기 위하여 블록의 크기 상향, 거치 수량을 재산정하여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특허분쟁 소지가 없는 이글루 블록을 선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문제 제기 3】

- 2020년 2차 보완 설계에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블록을 관급자재로 선정하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소파기능을 갖춘 ‘일반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블록’으로 등록된 다수공급자 2단계로 진행하는 것을 부적절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판단

-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¹⁾’으로 조달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적격성평가나 사전 심사를 통과 후 구매가 가능함
- 그런데,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입찰’로 구매한다는 ‘소파블록’을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 확인한 결과 ‘소파블록(세부품목번호 301315026)’이 아닌 “소파기능을 갖춘 ‘일반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블록(세부품목번호 3013150202)’” 부문의 다수공급자 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음
 - ※ 특허청 등록 명칭 : 소음 완화 및 충격 완충을 위한 소파블록
 - 콘크리트 제품이 조달청 다수공급자 물품으로 선정되려면 단체표준 인증 및 심사 사업을 주관하는 “○○협동조합연합회”에서 인증심사기준을 제정하고 단체표준 품질인증을 해야 함
 - 위 연합회에 2021. 1. 28. 확인 결과 ‘소파블록’은 수요기관에서 관급자재 수요가 빈번하지 않은 사유로 표준규격이 정립되지 않아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 물품으로 미등록 된 것을 확인함
 - 그러므로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입찰’로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 소파블록을 구매한다는 것은 현재는 불가능한 상황임

1)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입찰은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써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

- 이에 ♣♣♣♣가 추진하는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입찰’ 방식은 3개 특허와 5개 제조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특허의 소지가 있음
- 살피건대, ♣♣♣♣는 현재상태에서 ‘소파블록’ 으로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을 통해 구매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소파블록’ 을 조달청의 공개입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다른 계약방식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제 제기 4】

- 2020년 2차 보완설계에 공법에서 관급자재로 변경되어 선정된 소파블록은 반사파에 대한 검증(수리모형실험 데이터)가 필요하고, 설계서 규격에 맞는 소파블록은 제1안(◆◆, ♥♥, ♣♣)만이 왜 설계서에 일치하는 유일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

※ 「공법」은 블록을 공사 현장에서 제작하는 방식이며, 「자재」는 블록을 공장에서 제작 후 운반·공급하는 방식

- ♣♣♣♣와 용역사는 2020년 제2차 보완 설계에서 블록 제작장으로 이용하고자 계획했던 녹동신항 배후부지가 타 기관으로 임대되어 접안시설 소파블록을 현장에서 직접 제작하는 공법에서 관급자재로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됨
- ■■신항 일반·모래부두 접안시설의 소파블록이 관급자재로 선정되는 용역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 공급 가능한 관급자재 소파블록은 총 3종류, (1안) 전남업체 ◆◆, ♥♥, ♣♣, (2안) 충남업체인 ○●, (3안) 경북업체인 ♠♠으로 5개 업체로 조사가 되었고,
 - 관급자재 소파블록의 비교·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음.

구 분	소파블록 제 1 안	소파블록 제 2 안	소파블록 제 3 안	
표 준 면 도				
블록의 형태				
제작사	◆◆, ♥♥, ♣♣	●●	◎◎	
블록 특성	규격(m)	◎◎~●●(L)×◎◎~●●(B) ×◎◎~●●(H)	◎◎~●●(L)×●●(B) ×◎◎(H).	◎◎~●●(L)×●●(B) ×●●(H)
	공극률	●●% ~ ◎◎%	◎◎% ~ ●●%	◎◎% ~ ◎◎%
	반사율	●● ~ ◎◎	◎◎ ~ ◎◎	◎◎ ~ ●●
	중 량	●●tonf ~ ◎◎tonf	◎◎tonf ~ ●●tonf	●●tonf ~ ◎◎tonf
장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제작으로 품질 균일 • 소파효과가 타 블록에 비해 우수 • 전라남도 관내 제품 • 공극률 최대 • 경제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제작으로 품질 균일 • 소파효과가 타 블록과 동등함 • 안정 확보를 위한 콘크리트블록 추가 필요 • 충청남도 제품 • 공극률 낮음 • 경제성 불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제작으로 품질 균일 • 소파효과가 타 블록과 동등함 • 안정 확보를 위한 콘크리트블록 추가 필요 • 경상북도 제품 • 공극률 보통 • 경제성 양호 	
경제성	82.5백만원/m	85.3백만원/m	81.3백만원/m	
선정	◎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은 보통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전라남도 관내제품인 소파블록 제 1 안을 선정함. 			

- 관급자재는 2단계 경쟁입찰을 통해서 제품을 선정함.
- 관급자재 구매 시점에서 제품 변경 가능.

<소파블록 반사파에 대한 수리모형 실험 데이터 검증 관련>

- 소파블록은 파력의 감쇄나 반사파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블록제품으로 소파 효과는 블록의 공극률이 클수록 반사율*이 작을수록 크고, 현재 성능을 검증해 주는 국가인증 기준 및 기관은 없음
 - * 파도가 소파블록을 부딪친 이후 파력이 반사되어 나가는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로 반사율이 0.5일 경우는 파력을 50%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냄
- 〰〰〰〰는 소파 효과의 검토를 1안과 3안은 제조회사에서 제출한 카달로그(일본어 번역본), 2안은 ♣♣해양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수리모형실험'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비교·분석하여 1안으로 선정
- 〰〰〰〰는 반사파 등 소파 효과를 설계서에 반영하여 〰〰〰〰 지방 건설심의위원회²⁾ 심의를 통해 검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
 -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위원의 2020. 9. 22. 접안시설에 '소파블록 적용 사유 및 적정성을 검토' 하라는 의견에 대해
 - 〰〰〰〰는 소파블록의 '적용 사유' 는 2012년 최초 설계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당시, 접안시설에 소파블록 적용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반영하였던 것이고,
 - '적정성' 에 대해서는 반사파 저감효과를 가진 소파블록을 적용하였기에 적정하다는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함
- 살피건대, 〰〰〰〰가 반사파 검증을 제품 카달로그 상품정보만으로 검증하게 된 것은 소파효과의 검증을 위한 국가인증기관이 없어서 차선책으로 〰〰〰〰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로 갈음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향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반사파 검증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총공사비 100억 인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새로운기술과 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전라남도 건설교통국 지역계획과에서 운영

<설계서에 ‘소파블록 1안’ 만이 반영된 사유>

- ☞☞☞☞는 2차 보완 설계 보고서에 접안시설의 소파블록 관급자재를 소파 효과가 뛰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생산제품인 ‘소파블록 1안’ 을 선정해 놓고,
 - 구매는 3개 안 5개 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입찰’ 을 통해 구매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살피건대,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입찰’ 방식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소파블록은 현재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이 없어 시행이 될 수 없는 방식인데도 이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및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입찰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다수 업체의 참여를 통해 관급자재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를 살려,
 - 구매대상 제품을 ‘1안’ 으로 확정하지 말고 다수의 제품이 구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의 보완이 필요해 보임

【문제 제기 5】

- 2020년 2차 보완설계 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과 ♠♠♠♠ 건설공사 공법·자재 선정위원회에서 특허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허블록을 선정한 점에 대한 문제 제기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절차 미이행 관련>

- ☞☞☞☞가 제출한 ‘특허제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 제품으로 등록된 관급자재를 구매할 경우 협약체결 여부’ 에 대한 조달청의 2021. 1. 4. 질의회신에 따르면,
 - ‘소파블록’ 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특허제품이더라도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입찰’ 로 구매 시 조달청 규정에 따라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심사 절차를 통해 적합하게 판단된 제품
이라면 특허 여부에 상관없이 다수공급자 계약체결이 가능하고,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로 조달구매 하면 별도의 신기술
(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유권해석함

- 살피건대, 특허제품이더라도 조달청에 다수공급제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할 필요 없다는 조달청
유권해석에 따라 반드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체결을 해야 할
의무는 없고 그 대상도 아닌 것으로 보임

<공법·자재 선정위원회 특허 심의 절차 미이행 관련>

- 「공법·자재 선정 개선방안 - 2015. 3. 23. 도지사
방침 결재」에 따르면 전라남도 건설공사에 ‘신기술(특허) 공법·자재
로만 선정’ 하여야 하는 경우, 신기술(특허) 적용의 타당성에 대해
공법·자재선정위원회에서 심의 한 후 선정토록 하고 있음
- 그리고, “공법·자재 선정위원회” 는 2021. 2. 11. 위 위원회가 신기술(특
허)을 보유한 업체들의 공정한 참여기회를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는 바,
 -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입찰’ 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소파
블록’ 을 구매할 경우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므로, 공법·자재선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함
- 살피건대, 신기술(특허)만이 아닌 일반자재도 구매가 가능하므로
전라남도 공법·자재선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점,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입찰’ 을 통해 구매한다면 공법·자재 선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지역계획과 의견으로 보아 위원회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 4’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소파블록이 없으므로 검토 실익이 없음

【문제 제기 6】

- 2020년 2차 보완설계에 반영된 블록의 특허권자인 유한회사♣♣가 2차 보완 설계를 불법 하도급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 제기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5항 및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업체가 발주청으로부터 건설기술용역을 도급 받은 경우 다른 용역업체로 하도급 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는 2020. 2. 10. 「◇◇◇ ◎◎신항 일반·모래부두 기본설계 변경설계 용역」을 지난 2015년 완료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 업체인 주식회사 ♥♥에 기존 설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설계비용의 최소화 사유로 회계과에 수의계약으로 의뢰하였음
- 살피건대, 제출받은 용역 관련 착수계와 계약사항 등 한정된 자료만으로 검토한 결과는 하도급 관련 블록제작 특허를 보유한 업체인 유한회사 ♣♣의 불법 하도급 여부는 발견하지 못하였음

【문제 제기 7】

- 제2차 보완 설계에 반영된 특허블록을 생산하는 ♣♣, ♥♥, ♠♠ 3개 업체 중 어느 회사가 입찰이 되든지 특허블록이 채택되는 상황으로 3개 업체와 특허권자는 서로 연관된 회사로 추정되니 이에 대한 문제 제기

- ☼☼☼☼는 2020년 제2차 보완 설계에서 ♣♣, ♥♥, ♠♠ 3개 업체를 설계에 반영하였음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17조에 따르면 2단계경쟁 과정에서 제안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납품 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담합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납품 대상 업체 선정 및 납품 요구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2차 보완 설계에 반영된 3개 업체 중 ♣♣와 ♥♥은 특허권자인 ◎◎와 나머지 주주는 친인척 관계로 조사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	♥♥	♠♠
대표이사	◆◆◆(대표)	▣▣▣(대표)	●●●
주주정보 *출처 : saramin 기업정보	♠♠♠(40%) ♣♣♣(20%) ◇◇◇(10%) ◆◆◆(10%) ◆◆◆(10%)	♠♠♠(60%) ●●●(18%) ⊗⊗⊗(12%) ♣♣♣(5%) ◆◆◆(5%)	정보없음
소파블록 특허권	◎ (발명자 ♠♠♠, ◆◆◆)		
소재지	♠♠시 ㄷ길 000-00	♠♠시 ㄷ길 000-00	◆◆군 ㅂ로 0000
법인설립일	2009년	1990년	2009년
업종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제조업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어소, 어도, 옹벽블럭, 테트라포트 제조 및 판매업
우선구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해당없음

- 살피건대, ♣♣와 ♥♥의 주주는 친인척 관계로 연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별도의 법인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생산제품이 각각 등록되어 있고,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갖춘 독립된 법인이므로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아무런 법적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제재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그러나, ☼☼☼☼가 향후 현재 설계에 반영·선정된 소파블록의 규격만으로 2단계 경쟁입찰을 진행할 경우 특허권자와 친인척 관계인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바,

- ☼☼☼☼가 동일한 성능의 소파블록을 대상으로 2단계 경쟁입찰

방식만을 고수하지 말고, 총액입찰 방식 등 다양한 계약방식을 검토하여 다수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연 번	제 목	신분상 조치		시 정				주 의	개 선	경 고	권 고	비 고
		정계 (건/명)	훈계 (건/명)	건 수	재정상 조치							
					소계	회수	추정· 감액					
	1건										1	
1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부적정(권고)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① ◎◎신항 일반·모래부두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부적정(권고) …… 17

전라남도

권 고

제 목 ◎◎신항 일반·모래부두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부적정

기 관 명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내 용

전라남도 해운항만과는 2011년 7월에 ♠♠ ●●신항으로 농산물, 잡화 모래 등 늘어나는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일반부두 1석과 모래부두 1석을 축조하는 항만공사의 ‘♠♠ ●● 신항 일반·모래부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차례의 보완설계를 거치면서 현재 용역은 중단된 상태이다.

해운항만과는 2012년 12월 위 용역에서 선박 접근 시 발생하는 파랑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 부두 접안시설을 파랑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파도를 저감 할 수 있는 ‘소파블록’으로 시공하기로 하고, 설계에는 소파블록 중 ‘매블록 공법’(특허공법)을 설계 단가에 적용하였고, 2015년 1차 보완설계에서는 ‘이글루 공법’(일반공법)으로 변경하였으며, 2020년 2차 보완설계에서 블록 제작장으로 이용하고자 계획했던 ♠♠ ●●신항 배후부지가 타 기관으로 임대되어 접안시설 소파블록을 현장에서 직접 제작하는 공법에서 관급자재로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으로 조달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적격성평거나 사전심사를 통과 후에 구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20년 2차 보완 설계의 용역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공급 가능한 관급자재 소파블록을 3종류(5개사 제작)로 조사하였고, 이중 반사파의 성능이 우수하고 경제성은 보통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전라남도 관내제품 소파블록을 선정하고,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해운항만과가 추진 중인 ♠♠ ●● 신항 일반·모래부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차 보완 설계 용역보고서에서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입찰’로 구매한다는 ‘소파블록’을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 확인한 결과 ‘소파블록(세부품목번호 301315026)이 아닌 “소파기능을 갖춘 ‘일반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블록(세부품목번호 3013150202)’” 이

다수공급자 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콘크리트 제품이 조달청 다수공급자 물품으로 선정되려면 단체표준 인증 및 심사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콘크리트공업 협동조합연합회”에서 인증심사기준을 제정하고 단체표준 품질인증을 받아야 하나, ‘소파블록’은 수요기관에서 관급자재 수요가 빈번하지 않은 사유로 표준규격이 정립되지 않아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 물품으로 미등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 ●● 신항 일반·모래부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차 보완 설계 용역보고서에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입찰’ 방식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소파블록은 현재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이 없어 시행이 될 수 없는 방식인데도 이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종합쇼핑몰 등록 제품 및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입찰에 대한 검토가 소홀했다 하겠다.

그 결과 다수 업체가 참여를 통해 관급자재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공법·자재 선정에 따른 특혜 의혹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해운항만과는

‘○○○ ◆◆ 신항 일반·모래부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차 보완 설계와 관련하여 최초 설계부터 9년 시간이 경과 되어 주변 환경 및 여건이 변화된 점,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소파블록 구매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 ① 관급자재의 구매가 현시점에서 가능한 ‘총액입찰 방식’ 등 다양한 계약방식을 통해 다수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 ②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항만건설공사의 공법이나 자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